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법령정보 제공서비스에 관한
법률적 근거 마련 등 〉

■ 유상범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505호)

2025. 2.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이 화 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법령관련 정보의 대상 추가(안 제2조제3호가목)	3
2. 인공지능 등 기술 활용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안 제8조제2항 신설)	7
3. 리걸테크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협의체 구성(안 제9조)	11
IV . 관계기관 의견	1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유상범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4. 10. 2.
3. 회 부 일 : 2024. 10.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법제처는 법령정보를 신속·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웹사이트를 통해 국내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판례·해석례·일반행정 심판례 등을 제공하고 있음.

현재 전 세계에서 생성형 AI 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률서비스가 점차 영역을 넓혀가고 있어,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령정보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실제로 법제처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법령정보 제공서비스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정보를 다양하게 가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여 제공하는 사업자의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며, 인공지능을 이용한 법령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생성 AI)에서의 오류 발생 최소화 등 법령정보의 정확성 제고 및 민간과의 상호협력 방안을 지속

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법령관련정보의 범위에 법원 판례를 추가함으로써 현행 법령정보시스템에서 법원 판례를 수집·제공하고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9조제2항·제4항 및 제8조제2항, 제9조제3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법령관련정보의 대상 추가(안 제2조제3호가목)

현행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이하 “법령정보법”) 제2조는 “법령정보”를 “법령등”과 “법령관련정보”로 정의¹⁾하고,

“법령관련정보”를 ① 헌법재판소 결정례, 행정심판 재결례, 법제처 법령해석례 중 해당 정보를 생산·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제공하는 정보, ② 입법예고안, 규제영향분석서, 비용추계서 등 해당 정보를 생산·관리하는 장이 판단하여 제공하는 정보, ③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의견 및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제시례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는데²⁾,

개정안은 “법령관련정보” 중 ① 헌법재판소 결정례, 행정심판 재결례 및 법제처 법령해석례 외에 ‘법원 판례’를 추가하려는 것임.

1) 법령정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정보”란 법령등과 법령관련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2) 법령정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법령관련정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헌법재판소 결정례, 행정심판 재결례, 법제처 법령해석례 중 해당 정보를 생산·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제공하는 정보

나.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한 입법안,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국회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른 비용에 관한 추계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로서 해당 정보를 생산·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제공하는 정보

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의견 및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자치법규에 관한 의견제시례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법령관련정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3. ----- -----.
가. 헌법재판소 결정례, 행정심판 재결례, 법제처 법령해석례 중 해당 정보를 생산·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제공하는 정보	가. 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 ----- ----- -----
나. 다. (생략)	나. 다. (현행과 같음)
4. (생략)	4. (현행과 같음)

법제처는 1998년 법원행정처와 체결한 「종합법률정보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근거하여 현재까지 법원으로부터 일부 선별된 법원 판례를 받아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제공하고 있음에도, 현행 법령정보법은 “법원 판례”를 현행 제2조제3호가목의 “헌법재판소 결정례”와는 다르게 “법령관련정보”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화면 】



개정안은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원 판례”의 법적 근거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법령관련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대국민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임.

그런데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업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현행 제8조(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³⁾는 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법령정보를 각 호의 규정을 통해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 각 호는 법령정보 중 “법령등”에 해당하는 1. 현행 헌법, 법령 및 조약, 2. 제정·개정 등으로 변경된 연혁 법령,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⁴⁾으로만

3) 법령정보법 제8조(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법제처장은 국민이 원하는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법령정보를 통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이하 “법령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현행(現行) 헌법, 법령 및 조약
2. 헌법, 법령 및 조약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시마다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연혁(沿革) 헌법, 법령 및 조약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보

4) 법령정보법 시행령 제6조(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정보를 말한다.

1. 현행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2. 현행 행정규칙
3. 지방자치단체의 현행 조례 및 규칙 등 자치법규

규정하고 있어서 안 제2조 정의규정의 개정만으로는 여전히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한 “법원 판례”(법령관련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가 완비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례·해석례 등 “법령관련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를 완비하기 위해서는 제8조의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법령정보의 범위를 제2조 정의규정의 법령정보와 일치하도록 법문을 정비하는 방안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그 밖에 법제처장이 정하는 법령정보

2. 인공지능 등 기술 활용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안 제8조제2항 신설)

안 제8조제2항은 법제처장이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통하여 법령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법제처장은 국민이 원하는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법령정보를 통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이하 “법령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현행(現行) 헌법, 법령 및 조약 2. 헌법, 법령 및 조약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시마다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연혁(沿革) 헌법, 법령 및 조약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보 <신설> ② ~ ④ (생략)	제8조(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법제처장은 국민이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통하여 법령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령정보시스템의 <u>구축·운영</u>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5항----- -----구 축·운영 등----- -----.
---	--

법제처는 일반 국민이 정확한 법률 제명이나 법령용어를 몰라도 일상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문장을 통해 법령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AI검색 서비스)”을 2024년 12월부터 대국민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음⁵⁾.

또한, 법제처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여 법령조문, 입법배경 및 취지, 판례·해석례 등 다양한 법령정보를 정리·요약하여 제공하는 생성형 AI 법령정보 제공서비스를 준비 중인 것으로 설명함.

개정안은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및 생성형 AI 법령정보 제공서비스 사업⁶⁾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제처장이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통하여 법령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5) <https://www.law.go.kr/LSW/aai/main.do>

6) <출처: 법제처>

○ 사업 개요

- 사업명: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

- 사업기간: 2022년 ~ 2026년 (5년간)

- 사업예산: 약 68억원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22	'23	'24	'25	'26 (계획)	합계
2,322	2,537	1,102	513	377	6,851

【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메인화면/검색결과) 】


법제처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LawBot)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일상중어로 우리 나라의 법령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지능형 법령정보 통합검색


 키워드, 문장 등 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

인가검색어	#국가사법 #법원 #법원법 #소속대장관 #수도 #유류분한
가장 많이 본 법령 및 조문	#가호안과법 #도로교통법 제44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제2 #형법정보 보호법 #주거급여법


법제처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LawBot)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3.1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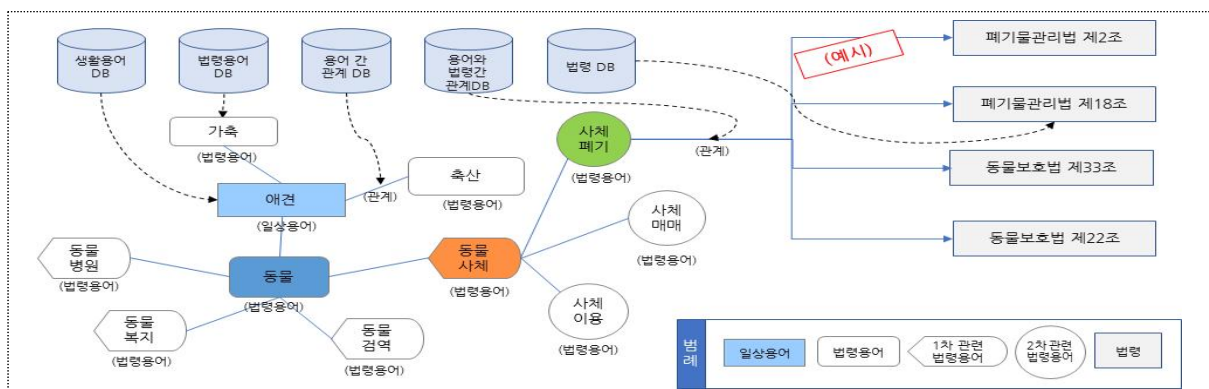
제11조(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1.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의 전액 배상이 이루어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3.11.17.]

제10조(피해환급금의 결정·지급) ① 금융감독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채권이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자 및 그 금액을 결정하여 그 내역을 제3조제1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3.11.17.]

제9조(피해환급금의 지급 등) ① 금융회사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피해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지정하는 금융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그러나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이 업무를 전자화하고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전자정부에 관한 일반법인 「전자정부법」은 이미 행정기관의 장이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⁷⁾을 규정하고 있고,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현재 “전자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법령 정보시스템과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는 정책 목적⁸⁾과 법령 검색결과에 있어 별도의 행정서비스인 것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사용함을 이유로 법령정보법에서 현행 법령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규정 외에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는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7) 전자정부법 제18조의2(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등)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공지능 등의 기술의 종류,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현행 제8조제1항은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목적이 국민이 원하는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을 규정하고 있고, 개정안 제8조제2항 역시 국민이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등 기술을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을 명시하고 있음.

3. 리걸테크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협의체 구성(안 제9조)

안 제9조제2항은 법제처장이 리걸테크사업자에게 법령정보의 제공 및 기술개발의 지원 외에 “사업의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법제처장이 법령정보의 원활한 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정부와 민간의 상호협력 방안, 법령정보의 정확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법령정보의 재분류·가공 및 활용 촉진) ① (생략) ② 법제처장은 법령정보를 다양하게 가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여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법령정보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제9조(법령정보의 재분류·가공 및 활용 촉진) ① (현행과 같음) ② 법제처장은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통하여 법령정보를 다양하게 가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여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령정보의 제공 2. 기술개발의 지원 3. 사업의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 ③ 법제처장은 법령정보의 원활한 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정부와 민간의 상호협력 방안, 법령정보의 정확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법제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령정보의 제공 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위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	---

리걸테크(LegalTech)는 법률을 의미하는 Legal과 기술을 의미하는 Technology의 줄임말로, 법률과 기술이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법률서비스를 의미함. 리걸테크는 ① 법령정보 검색, ② 변호사 검색, ③ 전자증거 개시 및 디지털 포렌식, ④ 법률 자문, ⑤ 디지털 재판 등의 유형⁹⁾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2007년 「재판외 법률서비스에 관한 법률」(RDG)를 제정하는 등 리걸테크 산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독일의 경우 다음과 같은 12개 서비스로 범주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¹⁰⁾.

변호사 업무지원 변호사 업무지원 도구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 제공	변호사 디렉토리 변호사가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유료 DB	자동화된 법률 자문 자주 발생하고 반복되는 중요 법률문제의 해결방안 제시	교육 및 연구 연구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
문서 분석 eDiscovery 및 AI를 활용한 대규모 데이터베이스 분석 도구 제공	문서 작성 표준화된 문서 템플릿을 개별화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 앱 제공	전문가 포털 법률 자문을 구하는 사람과 변호사를 연결하는 서비스	법률 앱 중요 법률에 대해 검색 가능하고, 구조화된 형식으로 제공하는 무료 앱 서비스
법률 데이터베이스 판결, 법률 및 주석 등이 포함된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응용프로그램	법률 프로세스 아웃소싱 주로 B2B 부문에서 활동하며, 법률부서 및 법률회사에 외부 전문지식 등 아웃소싱 정보 제공	뉴스 포털 뉴스 포털 및 콘텐츠 제공자가 법조계의 뉴스와 흥미로운 사안 등을 법조인에게 제공	법률 취업시장 공식이 있는 법률회사 및 부서에서 유료로 구인광고 게재(최근 애플리케이션은 매칭 알고리즘과 앱 제공)

9) 김혜진, 「신기술 규제의 일반원칙과 리걸테크」, 한국법제연구원, 2023. 8., 17면.

10) 국회 법사위,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2024. 9.)에서 재인용 박진애, 「리걸테크 관련 독일의 법률서비스법(RDG) 입법례」, 국회도서관, 2023. 4. 4
<https://www.legal-tech-in-deutschland.de/>

법제처는 현행 제9조제2항에 따라 리걸테크 사업자 가운데 법령정보를 가공하고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여 제공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오픈 API¹¹⁾를 통한 법령정보 제공, 법령정보지식베이스 기술 공유, 메타데이터 기술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음.

법제처는 최근 AI 기술과 함께 리걸테크 산업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법제처의 해외 ODA 사업과 연계한 해외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및 전문 컨설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해외로 진출하려는 기업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바, 안 제9조제2항은 법제처가 관련 리걸테크 사업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법제처 해외 ODA 사업 추진 현황

수원국	사업명	기간	예산 규모	주요 내용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23.~'27.	103억원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법령정보의 접근성 및 관리 효율성 제고
베트남	법제정보시스템 개선 컨설팅	'25.~'27.	33.5억원	법제정보시스템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통해 법령정보의 관리 및 입법체계 현대화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	'24.~'25.	5억원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체계개선(BPR)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컨설팅
우즈베키스탄	법령정보시스템 개선 컨설팅	'25.~'26.	10억원	법령정보시스템 개선 및 법령정보의 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개선 컨설팅	미정	4.8억원	법령정보시스템(MLIS)을 수원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11)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운영체제(OS)나 시스템, 애플리케이션(앱), 라이브러리 등을 활용하여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의미한다. 오픈 API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API다.

또한, 법제처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학습·생성과정에서 오류(환각, Hallucination)¹²⁾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 제9조제3항과 같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오류 여부를 검증하고 상호 자문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설명함.

그러나 기본적으로 법령정보법은 국내 법령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부가 법령정보를 신속·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법령정보 이용을 편리하게 하는데 입법 목적¹³⁾이 있음을 고려할 때, 동 법에서 민간 리걸테크 사업자의 외국 법령정보 수집·관리 및 해외 진출 지원의 근거를 두는 것이 법 체계적 관점에서 타당한 것인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AI 등을 활용한 법령정보 제공서비스는 앞서 살펴본 리걸테크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범주 중 일부이고 법령정보는 최종적으로 법률자문·변호사 업무지원 등을 위한 기반서비스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리걸테크 사업자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할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협의체 구성 근거를 법령정보법에 두고 구성 주체를 법무부장관이 아닌 법제처장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관련 산업의 진흥에 효율적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¹⁴⁾.

12) 인공지능이 실제로 사실이 아니거나 없는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현상을 생성형 AI 환각 현상이라고 한다.

13) 법령정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령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정보의 신속·정확하고 효율적인 제공을 통하여 국민의 법령정보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의 권익 보호와 법치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4) 참고로, 리걸테크 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기반 조성·인력 양성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정부가 리걸테크 산업과 관련한 공공데이터 공개·유통, 국제협력,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는

IV. 관계기관 의견

법제처는 개정안과 관련하여 법원 판례 공개에 관한 헌법적 근거가 존재하므로 이 법에 따른 법령관련정보에 법원 판례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이 2024년 12월 대국민 개통된 바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리걸테크 산업의 진흥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지속적인 상호 협력이 필요하며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전문인력 육성, 해외진출 등 지원 근거 조항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리걸테크산업협회를 통해 제시된 바 개정안과 같이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054

내용 등을 담은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권칠승의원 대표발의)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계류 중임.